

롯데푸드 주식회사 경영위원회 규정

1. 목적

본 규정은 롯데푸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정관 제36조 및 이사회 규정 제12.1.항에 근거하여 경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권한 및 기능

경영위원회의 권한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3.1.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3.2. 경영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안에 관한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관리, 감독할 수 있다.

4. 구성

4.1. 위원회의 구성

4.1.1.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4.1.2. 위원회는 회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4.1.3. 감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4.2. 위원장

4.2.1.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사 대표이사로 하고 경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4.2.2. 의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결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3. 경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자의 출석 등

경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회의

5.1. 소집권자

5.1.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시에는 제4.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1.2. 각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2. 소집절차

5.2.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를 소집함

에는 회의 일을 정하고 회일 3일전까지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5.2.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5.2.1.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5.3. 결의방법

5.3.1.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5.3.2.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또는 음성을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5.3.3.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3.4. 5.3.3.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 및 출석한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4. 통보의무

5.4.1. 위원회는 심의 내용 및 그 결과를 7일 내 이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5.4.2. 통지방법은 해당 의사록 제출로 같음한다.

5.5. 이사회와의 관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는 다시 결의할 수 있다.

5.6. 긴급사항

5.6.1.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임시 경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는 이를 선집행 할 수있다.

5.6.2. 전항의 경우, 대표이사는 지체없이 경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경위와 집행 사항 등 그 전말을 보고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6. 부의사항

6.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한다.

6.1.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6.1.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6.1.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1.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6.2. 위원회에서 부의할 사항

6.2.1.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6.2.2. 이사회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7. 위임

경영위원회는 신속하고 원활한 경영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사항의 결정 및 업무집행은 대표이사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8. 기타사항

8.1. 의사록

8.1.1. 경영위원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한다.

8.1.2. 의사록에는 경영위원회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출석하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간사가 보관한다.

8.1.3. 의사록은 이사회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한다.

8.2. 간사

8.2.1. 경영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 총무팀장이 이에 임한다.

8.2.2.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경영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

8.3.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한다.